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6억 2천 1백만 원
- 징수결정액 : 6억 3천 만 원
- 실제수납액 : 6억 3천 만 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수납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99.5%)임.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620,700	630,226	630,226	0	0	100
세외수입	22,137	31,663	31,663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3,787	6,685	6,685	0	0	100
재산임대수입	3,359	6,067	6,067	0	0	100
공유재산임대료	3,359	6,067	6,067	0	0	100
이자수입	428	618	618	0	0	100
기타이자수입	428	618	618	0	0	1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	미수 납액	수납률 (B/A)
임시적세외수입	18,350	24,978	24,978	0	0	100
기타수입	18,350	22,116	22,116	0	0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18,350	16,407	16,407	0	0	100
그외수입	0	5,709	5,709	0	0	100
지난연도수입	0	2,862	2,862	0	0	100
지난연도수입	0	2,862	2,862	0	0	100
국고보조금	598,563	598,563	598,563	0	0	1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39억 2천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39억 2천만원
- 지출액 : 36억 6천 8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2억 5천 2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4%(전년도 4.7%)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천 7백만원, 예산집행잔액 6천 5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3,919,715	3,667,500	0	252,215	6.4	
사 업 예 산 계	3,763,108	3,521,008	0	242,100	6.4	
비상 대비 및 민방위 대응 능력 강화	을 지 연 습 준 비 및 실 시	291,834	96,238	0	195,596	67.0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239,120	234,797	0	4,323	1.8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4,450	4,450	0	0	0
	동 합 방 위 협 의 회 운 영	121,480	119,262	0	2,218	1.8
	예 비 군 육 성 지 원	350,000	349,555	0	445	0.1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200	60,759	0	2,441	3.9
	시 민 안 보 의 식 함 양 지 원	220,000	219,985	0	15	0.0
	사 회 복 무 요 원 관 리	703,506	683,189	0	20,317	2.9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6,500	6,500	0	0	0
	민 방 위 교 육 운 영 비 (국 비)	667,037	667,037	0	0	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국비)	30,875	30,875	0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6,810	122,281	0	4,529	3.6
	민 방 위 교 육 장 운 영	183,561	171,345	0	12,216	6.7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0	0	0
	안 전 교 육 센 터 건 립 지 원	100,000	100,000	0	0	0
	민방위 장비 보급 · 확충	38,260	38,260	0	0	0
	지 역 민 방 위 대 방 독 면 확 충	566,475	566,475	0	0	0
일 반 예 산 계	156,607	146,492	0	10,115	6.5	
기 본 경 비	156,307	146,201	0	10,106	6.5	
재 무 활 동	300	291	0	9	3.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사무관리비) 사업에서 「민방위교육장 운영」(시설비) 사업으로 1천 4백만원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사업에서 4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4개 사업에 5억 9천 8백 563천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II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억 2,070만원) 대비 1.5%(953만원) 초과한 6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음.

※ 징수결정액(6억 3.023만원) 대비 징수율 100%임.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3,359	6,066	180.6	3,063	3,063	100.0	3,084	3,084	100.0
기타이자 수입	428	618	144.3	-	1,202	-	-	-	-
시·도비 반환금수입	18,350	16,407	89.4	10,369	19,706	190.0	10,367	15,227	146.8
그외수입	-	5,708	-	1,677	33	1.9	-	2,702	-
지난연도 수입	-	2,862	-	-	-	-	-	-	-
국고보조금	598,563	598,563	100.0	623,977	623,977	100.0	627,477	627,477	100.0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6,066	6,066	100.0	3,062	3,062	100.0	3,084	3,084	100.0
기타이자 수입	618	618	100.0	1,202	973	80.9	-	-	-
시·도비 반환금수입	16,407	16,407	100.0	22,265	19,706	88.5	18,475	15,277	82.6
그외수입	5,708	5,708	100.0	33	33	100.0	2,702	2,697	99.8
지난연도 수입	2,862	2,862	100.0	-	-	-	-	-	-
국고보조금	598,563	598,563	100.0	623,977	623,977	100.0	627,477	627,477	100.0

가. 그외수입 세입처리 부적정

- ‘그외수입’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 예산과목으로, 2018년도에 4건(5백 7십만원)의 ‘그외수입’이 발생였고, 그 중 3건은 자치구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임.

〈최근 3년간 그 외수입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	1,677	-	-
징수액	5,709	33	2,697	28,273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반환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후 반납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반납조치 하여야 하나, 발생 당시(2011년도) 자치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으로 임의 반납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남아있던 3건을, 7년이 경과한 2018년도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한 것임.

○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행정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1)를 위반한 것인바, 향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도 그외수입 발생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처리사유
1	2018	2018.02.19	70,00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반납액 접수입처리
2	2018	2018.02.19	3,313,36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반납액 접수입처리
3	2018	2018.02.19	70,00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반납액 접수입처리
4	2018	2018.03.06	2,255,310	17년 예비군육성지원	지체상금 접수입처리
5	2017	2017.01.10	33,000	2016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6	2016	2016.01.11	24,740	2015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등 반납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7	2016	2016.04.25	282,140	2015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이자 및연체료	반납액 접수입처리
8	2016	2016.08.08	461,140	민방위교육장 매점 공공요금 세외수입 세입조치	반납액 접수입처리
9	2016	2016.09.30	35,330	2014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10	2016	2016.09.30	4,79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11	2016	2016.09.30	1,54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12	2016	2016.09.30	14,28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13	2016	2016.10.21	1,734,000	2015년도 연봉채정 계산착오로 차액 반납	반납액 접수입처리
14	2016	2016.12.09	42,80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15	2016	2016.12.20	101,35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하반기 추가)	이자발생액 접수입처리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나. 세입예산 미편성

- 비상기획관은 ‘그외수입(570만원)’과 ‘지난연도수입(28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을 징수하였는바,
-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과목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매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바, 규정 준수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그외수입’/‘지난연도 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그외수입	-	5,708	-	1,677	33	1.9	-	2,702	-
지난연도 수입	-	2,862	-	-	-	-	-	-	-

- ※ 2017회계연도부터 비징수관 부서에서 결산하도록 운영사항을 변경하는 방침²⁾ 시행
-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³⁾에서는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였음.

2)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2016.8.18.)

3)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항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다. 시·도비반환금수입 예산 운용 철저

○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예산현액(1,835만원) 대비 10.6%(194만원) 부족 수납된 1,641만원을 징수하여, 비상기획관의 유일한 세입결손 발생 과목임.

※ 징수결정액(1,641만원) 대비 징수율 100%임.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에 대해 전년도(2017년)에 자치구로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징수결정액)과 ‘시·도비반환금수입(수납액)’의 차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매년 징수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시·도비반환금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18,350	10,369	10,367	8,345
징수액	16,408	19,706	15,228	20,280
수납률(%)	89.4	190.0	146.9	243.0

○ 이는 자치구에서 시비보조금을 적기 반환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시·도비반환금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⁴⁾)에 따라 다른 공과금에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우선하여 징수해야 하는 세입과목으로, 자치구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추수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이 적기에 반환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라.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과다 차이 발생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억 2,070만원) 대비 1.5%(953만원) 초과 수납된 6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25.2㎡) 대부료 수입으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임대료 계약금액의 상승으로 세입이 증가되어, 예산현액(336만원) 대비 80.6%(271만원) 초과 징수(607만원)되었는바, 3년마다 갱신⁵⁾되는 매점 대부 계약에 대한 숙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세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3,359	6,066	180.6	3,063	3,063	100.0	3,084	3,084	100.0

○ 한편, '기타이자 수입'은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환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43만원) 대비 44.3%(19만원) 초과 징수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최근 3년간 기타이자수입 세입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합계	620,700	630,224	101.5	639,086	647,981	101.4	640,928	648,490	101.2
기타이자 수입	428	618	144.3	-	1,202	-	-	-	-

2. 세출결산

-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39억 1,972만원) 대비 불용률은 6.4%(2억 5,222만원, 전년도 4.7%)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일반회계 2.1%)보다는 4.4% 높은 수준임.

가.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 비상기획관은 2018년 을지연습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을 공공건축물인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의 ‘시설비’로 1천 4백만원을 전용(2018.8.13.결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22.3%인 3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18년 제284회 정례회 기간에 전용사용 보고(2018.11.29.)하였음.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사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	전용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불용률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225,671	-14,000	211,671	24,097	187,574	88.6
민방위교육장 운영	401-01 시설비	33,500	14,000	47,500	44,382	3,118	6.6

- 또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79.1%인 3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	변경나	예산현액 [㉠] = ㉠ + 나	지출액 [㉡]	불용액 [㉢] = ㉠ - ㉡	불용률 ㉢/㉠
민방위교육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7,900	-4,000	53,900	49,069	4,831	9.6
	201-02 공 공운영비	42,395	4,000	46,395	43,232	3,163	6.8

-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은 결국 예산 전용과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 변경사용(4백만원)한 예산의 79.1%(316만원)를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 당시는 물론이고, 전용·변경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 비상기획관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적절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 등 4건(1억 7,690만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은 1,423만원을 편성하고 2,044만원을 집행하여 621만원 (43.6%)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 이류’의 경우 당초 66만원을 편성하여 1천만원을 집행하여 1,417%(938만 원)를 초과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14건에 2,885만원에 달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잔액	불응률 (%)	사유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을지연습 장비임차	4,000	-	4,000	100	을지연습 미실시
	을지연습 안보의식 고취	10,800	-	10,800	100	을지연습 미실시
	을지연습 급량비	161,504	-	161,504	100	을지연습 미실시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지원관리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	600	0	600	100	전문강사 직책상 강사료 수령불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2,500	3,100	△600	△24.0	인력동원 훈련시 장소 분산으로 인한 초과 수요 발생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0,030	34,295	△4,265	△14.2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4,680	5,137	△57	△9.8	
	회의장 임차료 등	7,200	7,979	△779	△10.8	
	전사장비 임차료	3,600	4,163	△563	△15.6	
	유공자 표창장 인쇄	550	677	△127	△23.1	표창장, 수취 추가제작
	영상자료 제작 및 인쇄 등	6,000	7,119	△1,119	△18.7	
	통합방위직전 지원	8,000	9,220	△1,220	△15.3	
	사전자료 검토	8,000	8,700	△700	△8.8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디리아리 제작비 지급	1,200	2,970	△1,770	△147.5	신규사회복무요원수첩인쇄→디리아리 인쇄 단가 상승
	화생방 관련 장비물자 준비 및 유지	4,410	4,483	△73	△1.6	
민방위교육장 운영	기본사무용품비	6,900	7,895	△995	△14.4	
기본경비	기본사무용품종이류	662	10,040	△9,378	△1416.6	한시임기제 임용 등
	행정장비수리비	2,520	4,109	△1,589	△63.1	복합기 유지비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	14,230	20,441	△6,211	△43.6	인쇄비 예산대비 증가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비상기획관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비상기획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예산의 과다 불용(20% 이상) 사업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을 통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현액(2억 1,167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억 8,757만원)은 88.6%로 과다하게 높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통계목별 20%이상 집행잔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무관리비	211,671	24,097	187,574	88.6	을지연습 유예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 2019년 편성액은 4% 감소된 2억 2,567억원 편성

- 비상기획관은 2018년도 을지연습(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행정안전부 방침6)에 따라 잠정 유예 및 축소 운영되어 관련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지방자치법7)」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에서도 을지연습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진척된 사항이 없는바,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6)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7)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라. 민간경상보조금(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8)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9)」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바, 예산현액(2억 2천만원) 대비(집행잔액 15천원) 높은 집행률(99.9%)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사업정산 내용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수요 증가로 당초 예산(1억 7천만원) 대비 7.5%(1,275만 5천원) 초과 변경하여 사용하고, ‘6.25 상기 안보결의 대회’(42만 8천원), ‘나라사랑 안보포럼’(1,234만 2천원) 예산은 일부 감액 변경하여 사용 하는 등, 의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각 사업별 면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 후 세 대 전 적 지 견 학	6. 2 5 전 쟁 기 념 행 사	나 라 사 랑 안 보 포 럼
예 산 액	220,000,000	170,000,000	20,000,000	30,000,000
집행액	219,985,170	182,755,400	19,571,310	17,658,460
집행잔액	14,830	-12,755,400	428,690	12,341,540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총 보조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사업은 전적지 해설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바, 참여 대상이 초·중고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견학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나라사랑 안보포럼’ 행사는 재향군인회 회원 위주 편성으로, 노령화 및 이념 편향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8년도 보조금 집행 또한 예산액(3천만원) 대비 40.2%(1,234만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사업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